

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521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3월 8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예우 관련 조문안(안 제6조)을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하고, 표창 수여 관련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르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6조(예우)의 제목을 '포상'으로 하고 표창 관련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, 안 제6조제2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포상)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
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또는 기관·단체 등에 「서울특별시 표창
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〈 수정안 조문 대비표 〉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예우)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기관·단체에 대한 표창</p> <p>2.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	<p><u>제6조(포상)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또는 기관·단체 등에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바르게살기운동조직”이란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.
2. “바르게살기운동회원”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바르게살기운동사업”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·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경비
2.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의 운영 및 행사·활동을 위하여 필요

한 경비

3.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·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
4.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지원 신청 및 정산 등)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,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,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6조(포상)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또는 기관·단체 등에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